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8. 31 - - - - - 옥영복의원외 6인
나. 회부일자 : 2007. 8. 31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50회 정례회(폐회중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07.9.4)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 노승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07.5.17)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의정활동 강화 및 회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(안 제1,2,3,5조)
- 연간 총회의 일수 및 임시회 회기 일수 조정 (안 제3조)
-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 조정 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개정 조례 안은 사하구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과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 변경에 관한내용으로

- 2007년 5월17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변경에 따라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조례」 중 일부 인용조문을 당연 조정하고
- 보다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현재 연간 총 80일의 회의 일수를 90일로 10일 늘려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, 지역주민과의 알찬대화, 그리고 효과적인 현지조사 활동 등 의정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- 또한 전년도 집행된 예산결산안 승인 등 심의를 위해 관련조례에 의거 매년 7월8일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그동안 운영결과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하절기 재해대책, 을지연습 대비 등 업무추진 일정과 상호 연계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6월20일로 변경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관련법령 검토와 부산광역시 타 구·군의회 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비교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